

착공연기신청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일
신청인	성명 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
신청내용	대지 위치	지번
	승인번호	
	승인일	① 착공예정일
	② 연기 사유	

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	
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·제3항	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,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	
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.	
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	

처리절차	
------	--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확인서 작성	→	확인서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: 국토교통부, 시·도, 시·군(주택 담당 부서)								